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14

발의연월일: 2022. 12. 20.

발 의 자:소병훈·허 영·김승남

인재근 • 양향자 • 김남국

남인순 · 임종성 · 안호영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로서, 국민의 생태환경 체험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산림청도 숲길 조성의 경제성·효과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2026년 까지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한국형 산티아고길인 849㎞의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트레일을 포함한 숲길 조성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닥쳐오는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발전

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
	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
	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
	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